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
징수조례 제정안

심사보고서

2022. 10. 20.(목)
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2. 9. 20. 성북구청장 (의안번호 제028호)

나. 회부일자: 2022. 9. 2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

【2022. 9. 29. 상정·의결(의견채택)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건설교통국장 김석우)

가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·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6조)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같은 법 시행령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
- 합 의: 해당 없음
- 예 산: 비용 발생 사항 없음
- 입법예고: 2022. 7. 28. ~ 2022. 8. 17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성호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(약칭:공유수면법)이 개정됨에 따라(2021.11.)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·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.
-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1)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·사용료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개정안임
- 조례안 제3조 ~ 제6조에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²⁾를 준용하였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부합하여 산정하였고,
안 제7조~제8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³⁾을 준용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

1) 제13조(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징수)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·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

2) 제11조(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징수)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.

1. 점용·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: 점용·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·사용료를 해당 점용·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.
2. 점용·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: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·사용료는 점용·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·사용료를 점용·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, 그 이후의 점용료·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,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.

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·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.

3) 제14조(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감면)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

부합하여 산정하였음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내에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과 감면 및 조정 등 관련법에 부합하였으며 조례(안) 시행 경과 규정을 두어 조례 시행 전 징수료는 공유수면법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시행에 따른 사전에 혼선을 예방 하는 등 본 조례 제정(안)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: 의견채택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전액 감면(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)
2.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50 감면. 다만,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.
3.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50 감면
4.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: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·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

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10. 20.(목)
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2. 9. 20. 성북구청장 (의안번호 제029호)

나. 회부일자: 2022. 9. 2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

【2022. 9. 29. 상정 · 의결(의견채택)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건설교통국장 김석우)

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는 상위법 위임규정이 없고 상위법 상 포괄된 사항이며 상위법만으로도 「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」 관련 사무가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- 조례 폐지 관련 법령 및 근거
 - 조례 제6조(하천 및 하천 산책로 등에서 금지행위)
 - 「동물보호법」 제13조 제2항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
 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) 제1항
 - 「경범죄처벌법」 제3조 (경범죄의 종류)
 - 조례 제7조(과태료 등) :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음
 - 「동물보호법」 제47조(과태료)제3항제4호
 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9조(벌칙)제1항제6~7호
 - 「경범죄처벌법」 제3조(경범죄의 종류)제1항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동물보호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○ 「경범죄처벌법」
- 합 의: 해당 없음
- 예 산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: 2022. 7. 28. ~ 2022. 8. 17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성호)

-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고 상위법만으로도 「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」 관련 사무가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-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으로는 「동물보호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경범죄처벌법」으로써
-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하천 및 하천 산책로 등에서 금지행위는
 - 제1호 : 동반한 애완동물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
 - 제2호 :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
 - 제3호 :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

- 제4호 :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, 덫, 장애, 울무, 함정,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,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하는 행위
 - 제5호 : 오물 투기 행위 또는 방뇨 행위로서 관련 상위법으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
-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등은
-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하천 및 하천 산책로 등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 규정이 없으며 본 조례에서는 관련 상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없이도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가 가능 함.
 - 지방자치법 제284)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벌칙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위임 없이는 조례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는 금지행위와 과태료 등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조례 없이도 관련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가 가능함으로 본 조례는 폐지가 타당하다고 봄, 다만 본 조례에서 규정한 하천사랑 지킴이 활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하다고 사료 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: 의견채택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4)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